

중 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 관련 사법해석 개정

2026. 09. 02.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26년 8월 20일, 2020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명확한 적용과 저작권 및 관련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개정 결정(2026년 제18호)을 발표했으며, 해당 결정은 2026년 5월 25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976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 저작물 공개 기준 및 합리적 사용 범위 구체화

저작물이 공개된 것으로 보는 판단기준에서 저작권자가 직접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공개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이 공개된 경우 실제로 공중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된 것으로 인정함. 한편 기존 사법해석에서 규정한 '실외 공공장소의 예술작품'에서 '실외'를 삭제함으로써 공개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장소의 미술저작물을 모사·회화·촬영·녹화한 결과물은 합리적인 방식과 범위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전시하거나 공개적으로 전파할 수 없도록 이용 범위를 구체화함.

○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허가 범위 명확화

기존 사법해석 제17조의 '신문·정기간행물' 범위를 '신문·정기간행물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발행된 종이 신문·정기간행물 및 그 내용과 판면 형식이 일치하는 디지털 버전'으로 명확히 함. 또한 신문·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 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 간의 이미 발표된 작품을 상호 전재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보상을 지급해야 함. 신문·정기간행물의 지면을 원래 형식 그대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것은 종이 매체의 전재 방식의 합리적인 확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외에 다른 형태로 신문·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정보망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에는 신문·잡지 전재 법정허가를 적용하지 않음.

■ 참고자료

최고인민법원 (最高人民法院)

- <https://mp.weixin.qq.com/s/pbUypEhXKYaPvHK6qZldWQ>